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7.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채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의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자동차세 위·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나. 채납처분 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종전 제7조)을 제정되는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로 이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구미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출장소장,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한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구미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를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
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법 제7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98조”를 “법 제107조”로 하며, 같은 호 다
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14
0조”를 “법 제11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68조”를 “법 제18
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
제1항제5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
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
제1항제4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 「지방세기본
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
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

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송달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⑦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받아야 할 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수령인의 성명
4. 교부 장소
5. 교부 연월일
6. 서류의 주요 내용

소관 실·과		세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영 활
	담 당	엄 기 득
	담 당 자	전 도 기 (480-6852)